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3,615,686	8,508,471
일반회계	248,490,904	7,454,727
특별회계	35,124,782	1,053,743
기타특별회계	35,124,782	1,053,74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08,936	87,268
수질개선특별회계	20,580,200	617,40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1,000	17,430
의료급여특별회계	180,700	5,42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2,790,850	83,726
주택사업특별회계	928,896	27,867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67,152	11,015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	3,007,300	90,21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9,500	1,185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3,567,546	107,026
기반시설특별회계	172,702	5,18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48,64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